

기업 외화 보통예금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기업외화보통예금
- 상품특징 :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며, 자유롭게 입출금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외화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)
상품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통예금
거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 : 영업점 • 해지 : 영업점
이자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, 12월의 20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함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기본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통예금 : USD 연 0.05% , CNY 연 0.20% (2021년 8월 13일 현재) <p>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</p>
이자 산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함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없음

<p>예금자보호여부</p>	<p>해당</p>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
<p>위법계약해지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 	
<p>계약해지방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	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670-5566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